

환경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알아보고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글로벌 녹색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 환경교육진흥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양재문 | 환경부 녹색협력과장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폐기물공학(석사)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장, 교통환경관리과, 화학물질안전과 서기관 등 역임  
tel. 02-2110-6687 | yjm0404@hanmail.net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

1983년 환경청(현 환경부) 주체로 열린 “환경교육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환경교육법이 소개되어 환경교육관련 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국립환경인력개발원, 2012)<sup>①</sup>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학계의 연구, 여러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제정의 토대를 다졌으며 법률안의 발의 및 폐기, 재발의를 거쳐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공포와 하위 법령 제정에 이르게 된다.

### | 필요성 |

환경교육진흥법 이전에는 환경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조치가 미흡했다. 단순 환경교육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으로 전환, 실천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 등 환경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변화를 유도한다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의 하나로 환경교육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예산 증액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였다(최석진 외, 2010)<sup>②</sup>.

## 환경교육진흥법 추진현황

### | 제정경과 |

날 짜	내 용
2000. 12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공주대 환경문제연구소·국회환경포럼)
2001. 4	국회환경포럼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대학교수, 연구원, 교사 등 11인)
2001. 10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2. 5	환경교육진흥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02. 12 ~ 2004.	환경교육진흥법안 발의 및 16대 국회 자동 폐기
2006. 1 ~ 12	수차례의 공개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등 모임 개최
2007. 3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7. 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안 심사 의결
2008.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 의결
2008. 3. 21	「환경교육진흥법」(법률 제8949호) 공포
2008. 10 ~ 12	동 법 시행령(대통령령 21097호), 시행규칙(환경부령 309호) 공포

### | 제정의의 |

동 법 제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경교육 실시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양질의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2012), 녹색강국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과 교육의 역할  
② 최석진 외(2010), 환경교육진흥법 제정과 국가 환경교육진흥발전 방안의 의미, 환경교육 23권 1호

환경교육지도자, 검증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에서 환경교육의 허브역할을 할 환경교육센터 등 향상된 환경교육 제도를 통해 환경 관련 전문 인력의 제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제시했다. 셋째,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추진 및 민간 차원의 환경교육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이들을 통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질적 향상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최석진, 2010).

### | 내용 및 추진현황 |

환경교육진흥법의 목적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동 법 제1조)함이다. 아울러,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동 법 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대상 즉 수요자중심 관점에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분류하여 각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명시하였다.

먼저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에 대한 국가적 종합 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매 5년마다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단·중장기 목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종합 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다음으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부처간 환경교육 진흥 정책과 관련된 조정·협의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계획의 심의,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대상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구분하여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협조요청이 가능함과 사회환경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환경교육전문인력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돕기위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을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에 있어서 총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 환경교육센터를 통해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경비지원 및 보조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되어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소개한다.

####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인증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동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6,7조)이다.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10인으로 구성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동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인증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 또는 그 밖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및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동 법 제15조).

환경보전협회에 설치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교육통합사이트 초록지팡이(www.keep.go.kr)를 통한 온라인 인증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인증지원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제1차 인증심사(시범인증)가 이루어져 총 11개 프로그램 중 10개 프로그램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제8차 인증심사가 진행 중이다. 총 인증률은 약 70%로 총 156개 프로그램이 인증되었다. 인증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지원단의 컨설팅을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능이 보강되며 인증된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되어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http://www.crezone.net)), 에듀팟([www.edupot.go.kr](http://www.edupot.go.kr))에 업로드된다.

#### ◆ 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동 법 제4조)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학교, 사회, 교육기반을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기초로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학습과 녹색실천의 연계추진 및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분야, 사회 환경교육 강화분야,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구축 등 3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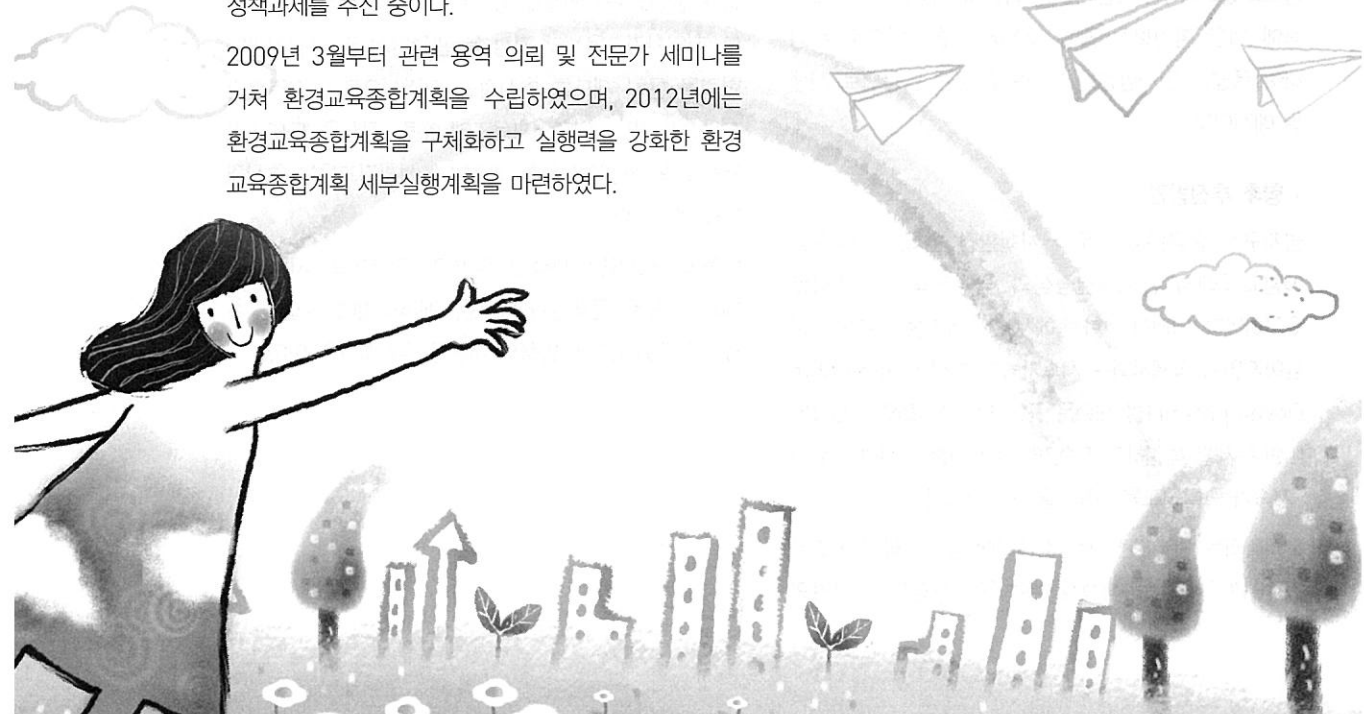
2009년 3월부터 관련 용역 의뢰 및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한 환경교육종합계획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동 법 제16조). 2012년 10월, 환경교육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공모가 실시되었으며 시행준비 중이다.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할 목적(동 법 제11조)으로 환경교육전문인력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국·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동 법 제12조)할 수 있다. 2012년 제도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과정 및 검정과정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환경교육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환경교육진흥법 향후계획

### | 국외 환경교육 관련 법령 |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적, 제도적으로 유사하다. 1990년 “국가환경교육법(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이 제정되어 환경교육분야에 일정한 기금의 확보, 환경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관련 재단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연방정부는 전국 규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지도를 이 법률에 의거하여 미국 환경청에 위탁하였고 그 후 연방정부 주지방 자치단체 관련기관과 학교교육 기관, 민간조직의 참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2006년 No Child Left Inside법이 제정되어 환경교육 및 교사교육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형식교육 내 환경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본은 1993년 환경기본법 25조에 “환경의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 환경교육·환경학습의 추진”이 명시된 것이 환경교육 관련 법령의 시작이다. 2003년 일본 최초의 환경교육추진법인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011년에는 동 법의 목적에 협동추진 추가, 기본이념과 정의규정에 생명존중, 경제사회와의 통합적 발전, 순환형 사회형성 등이 추가되어 법령의 일부 개정이 공포되었으며 2012년 10월, 법령의 이름을 “환경교육 등에 의한 환경보전 활동 촉진에 관한 법”으로 수정하여 폭넓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 향후 추진방안 |

범지구적 환경문제 대두와 사회환경 변화는 환경오염 예방교육에서 문제해결중심의 환경교육으로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새로운 규범으로 채택하였고 UN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을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 기조로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 지식중심, 단순체형 중심의 일회적 환경교육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어우러진 지속적인 참여형 환경교육 전환과 환경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선도자 육성이 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녹색인재 육성, 사회에서는 친환경 교육을 통한 실천하는 녹색시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환경부 녹색협력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민간단체의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강화, 유아대상 환경교육 기반 마련, 대학생 대상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 확대,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일반인 대상 환경교육 강화, 주 5일 수업제와 연계한 토요일 방과후 환경학교 운영, 환경교육의 거점으로서 환경교육센터 운영, 학교안-학교밖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2013년 실행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향후 환경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고 지역적으로는 지역환경교육정책 및 지역환경교육조례 수립 진흥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글로벌 녹색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의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될 수 있도록 2013년 동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